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00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정희용·최수진·김선교

김상욱 • 박준태 • 박덕흠

김성원 • 박충권 • 김상훈

고동진 • 정동만 • 김소희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의 수입 감소 피해 또한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정부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보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보험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 제명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 나. 농어업재해보험의 명칭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변경하고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농작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인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에 추가함(안 제2조제2호).
-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명칭을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으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손해"를 "손해와 농작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로,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정책보험"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손해"를 "손해 또는 농작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농어업정책보험사업(이하 "정책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 2. "농어업정책보험"이란 다음 각 목의 보험을 말한다.
 - 가.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 나. 어업재해보험: 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 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농작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2조의2제1항 중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을 "농어업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이라 한다)"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재해보험 발전"을 "정책보험 발전"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 중 "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제4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여, 같은 항제5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제5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며, 같은 장제5호 중 "재해보험"으로 한다.

제2조의3의 제목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을 "정책보험 및 농어업정책재보험"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을 "농어업정책재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재해보험 및"을 "정책보험 및"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을 "농업정책보험(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업정책재

보험"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보험"을 "농업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재해보험"을 "농업정책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보험"을 "농업정책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청"을 "농촌진흥청·산림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재해보험"을 "농업정책보험"으로 한다.

5. 농업수입안정보험분과위원회

제2장의 제목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재해보험의"를 "정책보험의"로,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정책보험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 및 임산물

제6조제1항 중 "재해보험"을 각각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7조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보험사업"을 각각 "정책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사업의"를 "정책보험사업의"로,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의"로,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재해보험의"를 "정책보 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재해보험"을 각각 "정책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한다.

제11조의7제1항 본문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각각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을 "정책보험가입자가 정책보

험"으로, "재해보험계약"을 "정책보험계약"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자는 정책보험사업"으로, "재해보험 업무"를 "정책보험 업무"로 한다.

제15조 중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자는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17조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재해보험가입자"를 "정책보험가입자"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사업자의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해보험가입자"를 "정책보험가입자"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보험에 가입할"을 "정책보험에 가입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21조 중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으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농어업정책보험사업"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4. 제14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관리·감독

제26조제3항 중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으로,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제28조 중 "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교육·홍보"를 "교육·홍보 •컨설팅"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정책보험사업자는 정책보험"으로 한다.

제29조 중 "재해보험의"를 "정책보험의"로, "재해보험가입자"를 "정책보험가입자"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을 "정책보험사업자에게 정책보험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해보험사업자"를 각각 "정책보험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정책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 제1조(목적) ------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 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 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 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 해와 농작물의 시장가격 변동 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손해-----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 ----농어업정책보험----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 2. "농어업정책보험"이란 다음 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 각 목의 보험을 말한다. 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 한 보험을 말한다. <신 설> 가.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 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

<신 설>

<신 설>

- 3. 4. (생략)
- 5.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 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 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 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
- 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 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

한 보험

- 나. 어업재해보험: 어업재해 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 한 보험
- 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업 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 해에 따른 손해 또는 농작 물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 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 3. 4. (현행과 같음)

ر	•				
		손해	또는	농작물	의 시
	<u>장가격</u>	변동	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 손해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 6. ------농어업정책 보험사업(이하 "정책보험사 업"이라 한다)-----

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 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해보험사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 <u>재해보험</u>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 3. <u>재해보험</u>의 대상 품목 및 대 상 지역에 관한 사항
- 4.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한 지원및 평가에 관한 사항

농어업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이라 한다)는 성정책보험
<u>험심의회</u>
<u>정책보험</u> <u>발전</u>
②
2. <u>정책보험</u>
3. <u>정책보험</u> 4. <u>정책보험사업</u>

- 5. 그 밖에 <u>재해보험</u>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u>재해보험</u> 발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2조의3(<u>재해보험</u> 등의 심의) <u>재</u> <u>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u> (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 에 따른 <u>농업재해보험심의회</u>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 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 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
 의 범위에 관한 사항
- 2.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3. (생략)
- 4. <u>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u>(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

5 <u>정책보험</u>
③
<u>정책보험</u>
제2조의3(<u>정책보험</u> 등의 심의) <u>정</u>
책보험 및 농어업정책재보험
농업정책보험심의회
1. <u>정책보험</u>
2. <u>정책보험사업</u>
 3. (현행과 같음)
5. (연행과 실금) 4. <u>농어업정책재보험사업</u>

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5. (생략)
- 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u>농업</u> 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u>재해보험 및</u> 재보험에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u>농업재해보험심의회</u>) ① <u>농</u> 제 <u>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u>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소속으로 <u>농업재해보험</u> 실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생략)
- 2. <u>재해보험</u> 목적물의 선정에관한 사항
- 3. 4.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u>농업</u>
 정책보험심의회
정책보험 및
<u>0 14 1 </u>
3조(농업정책보험심의회) ① 농
업정책보험(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업정
해 <u>의 도에서 들더기 옷 8 급경</u> 책재보험
색
<u>농업정책보험심의회</u>
1. (현행과 같음)
2. <u>농업정책보험</u>
3. • 4. (현행과 같음)

\bigcirc		\bigcirc	(생	략)
(Δ)	•	(3)	(/と)	4)

-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u>재해</u> 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농림축산식품부의 <u>재해보험</u> 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
- 3.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4. (생 략)
- ⑤ (생략)
- 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

(2) · (3) (현행과 같음)
4
1 <u>농업</u>
정책보험
<u>0 1 4 B</u>
0 누어져케
2 <u>농업정책</u>
<u>보험</u>
3
<u>농촌진흥청·산림청</u>
<u>0 1 2 6 6 1 1 1 1 6</u>
4 /원케키 키 O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 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 를 둔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략)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u>농업재해보험</u>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생 략)

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u>재해</u>
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u>가축재해보험</u>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
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
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
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u>.</u>
1. ~ 4. (현행과 같음)
5. 농업수입안정보험분과위원회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⑦
<u>농업정책보험</u>
<u> </u>
<u>,</u>
⑧ (현행과 같음)
제2장 정책보험사업
제4조(<u>정책보험</u> 의 종류 등) <u>정책</u>
보험의

<u>가축재해보</u>
<u>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농</u>
업수입안정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
<u>업수입안정보험</u>

제5조(보험목적물) ① 보험목적물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 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 조에 따른 <u>농업재해보험심의회</u>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 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 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략)

-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u>재해보</u> <u>험</u>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 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u>재해보험</u> 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② 정부는 <u>재해보험</u>에서 보상 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①
농업정책보험심의회
<u> </u>
1. ~ 3. (현행과 같음)
4.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작물
<u>및 임산물</u>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u>정책보</u>
<u> </u>
<u>정책보험</u>
 이 기비체
② <u>정책보험</u>
•

제7조(보험가입자) <u>재해보험</u>에 가 기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 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 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험사업자) ① <u>재해보험사</u> 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u>재해보험사업</u>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u>재해보험사업</u>의 약정을 체결하 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제2항에 따른 <u>재해보험사업</u> 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

제7 -	7조(보험가입자) <u>정책보험</u>
-	
-	
-	
-	3조(보험사업자) ① <u>정책보험사</u> 업
1	 L. ~ 3. (현행과 같음) ② <u>정책보험사업</u>
	 정책보험사업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정책보험사업</u>
- 제9 -)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_	<u>정책보험사업의</u> = <u>정책보험사업자</u> <u>정책보험의</u>

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 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 2. (생략)

- ② <u>재해보험사업자</u>는 보험약관 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모집) ① <u>재해보험</u>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u>재해보험</u>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u>재해보험</u>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 법」 제95조·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u>재해보험사업자</u>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 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농

 제10조(보험모집) ① <u>정책보험</u>
 1. ~ 3. (현행과 같음)
② <u>정책보험</u> <u>정책보험</u>
- <u>정책보험사업자</u>

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 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 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 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 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생 략)
 - ② <u>재해보험사업자</u>는 사고 예 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 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u>재해보험</u> 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 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 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 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책보험사업자</u>
<u>.</u>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u>정책보험</u>
<u>사업자</u>

- ② (생략)
- ③ <u>재해보험사업자</u>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 한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손 해평가인 상호간에 담당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를 수행할 수 있 다. 이 경우 교차손해평가의 절 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④ ~ ⑦ (생 략)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 해평가사는 <u>농작물재해보험 및</u> <u>가축재해보험</u>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u>재해보험사업자</u>는 수급권자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 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 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보험사업자
<u>.</u>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u>농</u> 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
<u>보험</u>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정책보험사업자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 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u>재해보험사업자</u> 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 며, <u>재해보험사업자</u>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u>재해보</u> <u>험</u>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 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u>재해</u> 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	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	신청) ①
	정책보험사업자-
	<u>0 144 H 1 B 1 </u>
	정책보험사업자
	<u>0 9 4 6 7 6 7 1</u>
	 ② · ③ (현행과 같음)
ᆀ	2 · ③ (원왕과 필요) 12조(수급권의 보호) ① 정책보
/ '	
	<u> </u>
	<u>_</u>
_1]	② (현행과 같음)
제	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
	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정책
	<u>보험가입자가 정책보험</u>

우 그 양수인은 <u>재해보험계약</u>	<u>정책보험계약</u>
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	
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4조(업무 위탁) <u>재해보험사업</u>	제14조(업무 위탁) <u>정책보험사업</u>
<u>자는 재해보험사업</u> 을 원활히	자는 정책보험사업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	<u> 정책보험 업무</u>
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 구분) <u>재해보험사업</u>	제15조(회계 구분) <u>정책보험사업</u>
<u>자는 재해보험사업</u> 의 회계를	자는 정책보험사업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	
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조정) <u>재해보험</u> 과 관	제17조(분쟁조정) <u>정책보험</u>
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다.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	① <u>정책보험사업</u>
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	
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	
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	
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	

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u>재해보험사업</u>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 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 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을 <u>재해보험사업자</u>에게 지급하

· 기 게 되 원 기 어
② <u>정책보험사업</u>
,
제19조(재정지원) ①
정책보험가입자
<u>정</u>
책보험사업자의 정책보험
<u>정책보험가입자</u>
<u>8年日月日刊</u>
②
- <u>정</u> 책보험사업자

여야 한다.

③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u>재해보험에 가입할</u> 경우에는 제1항에도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제3장 재보험사업 및 <u>농어업재해</u> 재보험기금

-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u>재</u> <u>해보험</u>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 입하려는 <u>재해보험사업자</u>와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 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 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 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 2. · 3. (생략)
 - ③ (생 략)

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u>.</u>
③
정책보험 에
가입할
<u> </u>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재보험사업 및 <u>농어업정책</u>
재보험기금
제20조(재보험사업) ① <u>정</u>
<u> 책보험</u>
②
<u>정책보험사업자</u>
1. <u>정책보험사업자</u>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기금의 설치)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u>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u>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의2(<u>농어업재해보험사업</u>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재해보</u> <u>험사업</u>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 2. <u>재해보험</u> 상품의 연구 및 보 급
- 3. ~ 5. (생략)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에 위탁할 수 있다.
- 1. (생략)
- 2. 제8조제2항에 따른 <u>재해보험</u>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3. (생 략)

<신 설>

4. 그 밖에 <u>재해보험사업</u>과 관 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u>농어업정책재보험기금</u>
제25조의2(<u>농어업정책보험사업</u> 의
관리) ①정책보
====== <u>경색모</u> 험사업
<u> </u>
1. 정책보험사업
 2. <u>정책보험</u>
3. ~ 5.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u>정책보험</u> 사업
<u>사업</u>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에 따라 위탁된 업무
의 관리ㆍ감독
<u> 5.</u> <u>정책보험사업</u>

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생략)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 ②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u>재해보험사</u> 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u>재</u> 해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 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 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④ (생략)

제27조(시범사업) ① <u>재해보험사</u> 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 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 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 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u>재해보험</u>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u>교육·홍보</u>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

3 (현행과 같음)
제26조(통계의 수집 · 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3)
 정책보험사
<u> </u>
<u>-1 II</u>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시범사업) ① 정책보험사
· · · · · · · · · · · · · · · · · · ·
<u>업자</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u>정책보험</u>
<u>교육·홍보</u>
<u>·컨설팅</u>

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u>재해보험사업자는 농</u> <u>어업재해보험</u> 가입 촉진을 위 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 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 <u>재해보험사업</u>
<u>자</u>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제	· 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u>정책보험사업자는 정</u>
	<u> 책보험</u>
	<u>.</u>
	② (현행과 같음)
제	29조(보고 등)
	<u> 정책보험의</u>
	<u>정책보험가입자</u>
	<u>정책보험사업자에게 정책보</u>
	<u> 험사업</u>
_11	
	32조(과태료) ① <u>정책보험사업</u>
	<u>자</u>
	② <u>정책보험사업자</u>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 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 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 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
- 2. · 3. (생략)
- ④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③
1
정책보험사업자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